

주요 개정 내용

□ 관련근거
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515호(2020.4.3.) “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”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2186호(2020.5.22.) 「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」 지침 통보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83호(2019.11.1.)
-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-4223호(2018.6.8.) 「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침」 통보
-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-2612호(2020.5.29.) 「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」 통보

□ 주요 개정 내용

○ 항목 확대(43항목)

구분	조정코드	내역
심사불능 (6항목)	26-36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진료비 지원 명세서 착오청구
	26-37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진료비 미지원 명세서 착오청구
	SK-01	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
	SK-02	신포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관리료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
	SL-01	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청구대상 중 주상병에 기재된 의료인 면허정보와 공단자격 불일치
	SL-02	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
심사조정 (37항목)	B	생활치료센터 운영기관 아님으로 조정, 요양병원 병문안관리기준 미신고 기관 조정 등

3. 시행일자

-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